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20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12월 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김정일

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에 명시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등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
 - 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⇒ 2022년 12월 31일
- 관련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정비
 - 제6조3항 「지방재정법」 ⇒ 「지방회계법」
 - 제10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⇒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, 「지방회계법」과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및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의 정비 등 띄어쓰기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